

2016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등록 안내

1. 2016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16년 8월 31일(수) ~ 9월 19일(월) 18시 마감(기일 엄수) / 20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기일 엄수, 9월 19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담당) : 본부 운영지원국 김도현 차장

나.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 ① 2016년 공의원 선거 후보 등록서(소정양식) 1부
- ② 공의원 후보 추천서(3회임원선거세칙 별지1) 1부 : 통상단위 3인 이상의 추천
- ③ 의무 이행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지부장 발행(지부 직인 포함)

[참고] 3회임원선거세칙 제6조(추천 후보자 수 제한) 통상단위 1인은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를 각각 3인까지 추천(별지1)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추천했을 경우에는 당해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3. 지부 협조 사항

가.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나. 후보자 의무 이행 확인서 발행

다.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라. 지부소속 통상단위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4.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위
- ②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
- ③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
※ ②, ③번 기준일 : 2015. 1. 1 ~ 2015. 12. 31

나. 자격제한

-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위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기준일 2013. 1. 1 ~ 2015. 12. 31).

※ 임원의무금(임원회비)는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함. 결산 이후에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 통상단위 자격을 획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4년 9월 19일 이후 서약자는

제한).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는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다. 관련 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2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3조(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① 통상단우는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전년도 기준 1년간 약법 제20조에 규정한 단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3. 12. 5. 개정)

1.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2.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단우
3.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 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우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3. 12. 5. 개정)

1.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는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5. 12. 4. 개정)

③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3. 12. 5. 개정)

- 단우 관리 규정

제13조(의무면제 단우) ① 단우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지부에 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지부 임원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③ 의무면제 단우가 활동 재개의 의사가 있을 경우 의무금 납부 신청서를 소속 지부에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소속 지부는 의무면제 단우에게 의무면제 해제 통보서를 발부하며, 의무면제 단우는 각종 권리가 회복된다.

[별첨1]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

◎ 임기 : 3년 (2016. 12. 1 ~ 2019. 11. 30)

◎ 약법 제9조(공의회) ① 공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의회 의장,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약법의 개정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심의·의결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 3회 운영 규정 제10조(의무 및 자격상실)

- ① 공의원은 단의 결의를 모범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의원이 6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불참할 때에는 공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 공의원 의무사항 : 임원의무금(임원회비) 매년 40만원 납부